

예산총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09,912,000	30,297,360
일반회계	917,287,000	27,518,610
특별회계	92,625,000	2,778,750
공기업특별회계	77,650,000	2,329,500
상수도사업	30,150,000	904,500
하수도사업	47,500,000	1,425,000
기타특별회계	14,975,000	449,25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587,000	167,61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502,000	15,06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64,000	7,920
주택사업	335,000	10,050
주차장설치사업	400,000	12,00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76,000	5,280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22,000	15,660
의료급여기금사업	2,462,000	73,860
공공급식지원센터	4,727,000	141,81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불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70,489천원으로 한다.

(일반 4,292,649천원, 재해재난목적 1,000,000천원, 내부유보금 277,840천원)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3,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제 6 조 예산의 재원 구분을 위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국: 국고보조금 / 균: 균특회계보조금 / 기: 기금보조금 / 특: 특별교부세 / 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 도비보조금 / 조: 특별조정교부금